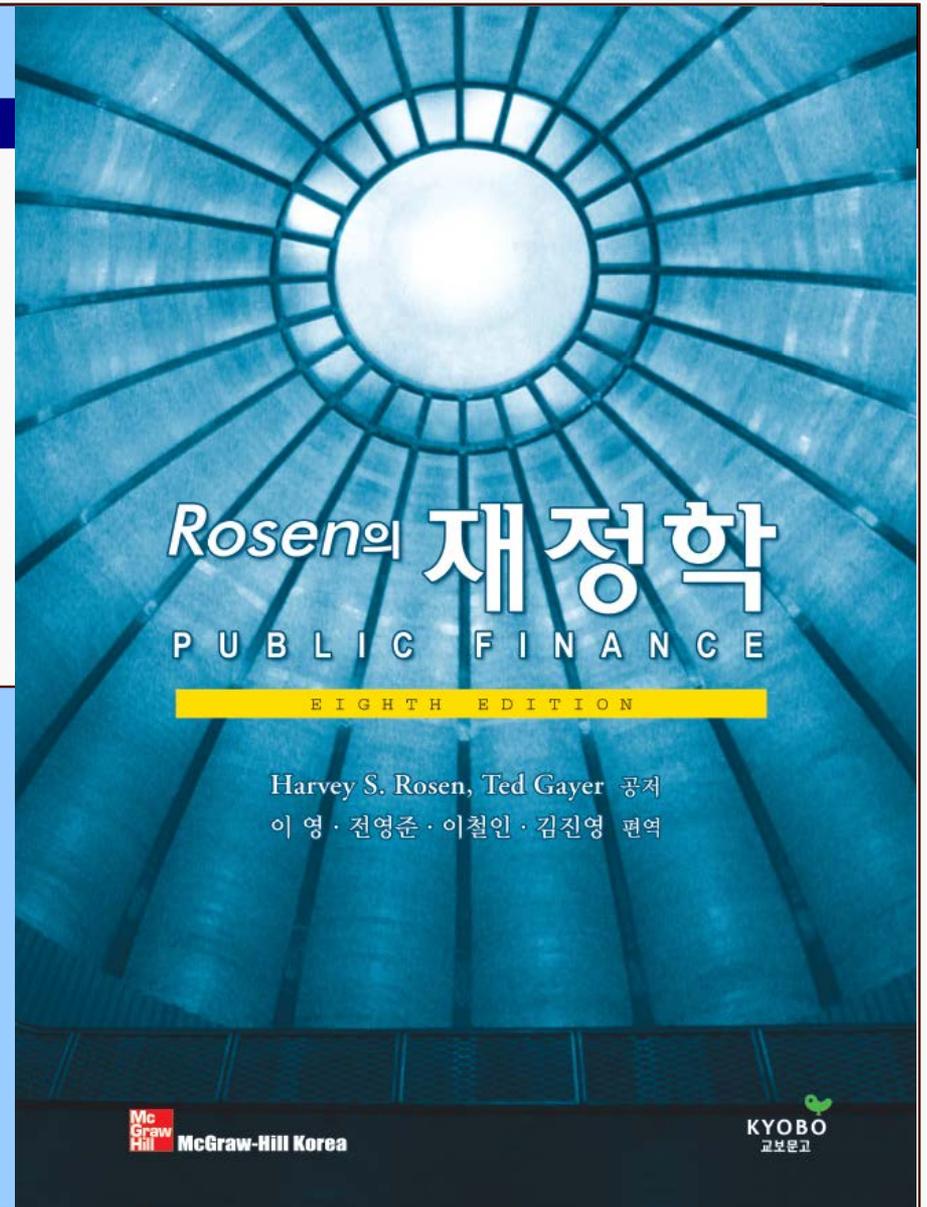


# 제 19장

# 법인세



## 19.0 법인이란?

### □ 법인(Corporation, 주식회사)란

- 주주(소유자)는 유한책임만을 지는 독립적 법적 지위를 지닌 국가 승인의 기업 형태
  - 유한책임: 인수한 주식 가액에 한정된 유한책임
  - 독립적 법적 주체: 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을 소유하고, 부채를 발행하고, 소송하거나 소송을 당할 수도 있음

### □ 법인의 장점

- 유한책임을 통한 다수로부터의 자본 조달
- 소유·경영 분리를 통한 운영효율성 증대
- 또한 다수의 소액 자본가 등장으로 형평성 효과

## 19.0 법인에 대한 별도의 세제가 합당?

- 사람만이 납세를 할 수 있다.
- 법인 과세의 근거
  - 법인은 구분되어지는 독자적인 존재
  - 법인은 사회로부터 특권을 받음
    - 법인의 주주는 유한책임, 이에 대한 대가가 법인세
  - 개인소득세의 완결성을 위해 존재
    - 법인세가 없다면 사내유보된 이윤에 대해서는 향후 주주에게 배분되기 전까지는 과세가 유보
    - 이러한 과세 유보는 세금 부담을 낮추게 됨

## 19.1 법인세의 구조

총수입

- 인건비, 이자비용, 감가상각비

과세표준

\* 세율 (1억원 이하 13%, 이상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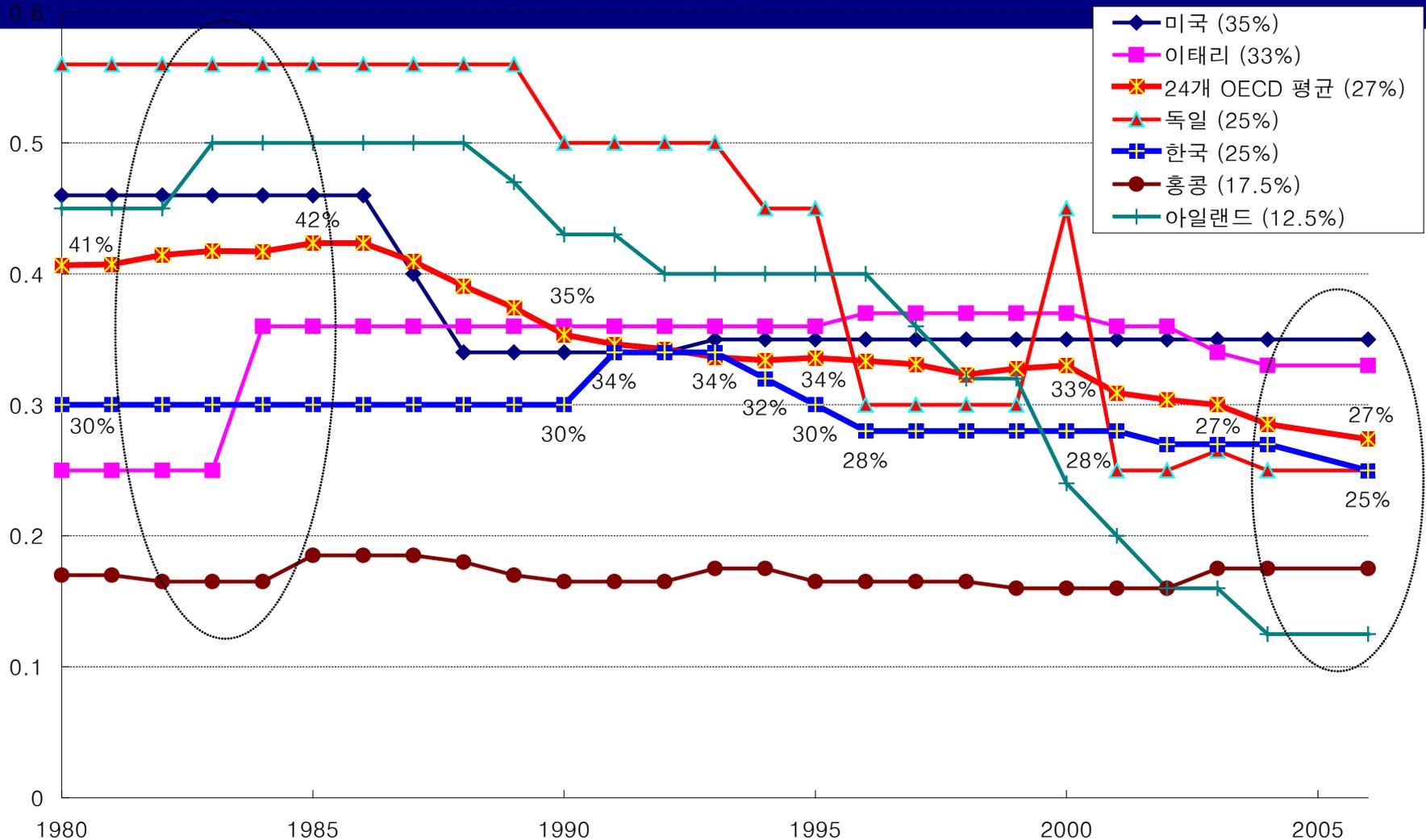
산출세액

- 세액공제: 연구개발비, 중소기업, 외국납부세액 등

결정세액

\* 법인세율 추이: 그림 1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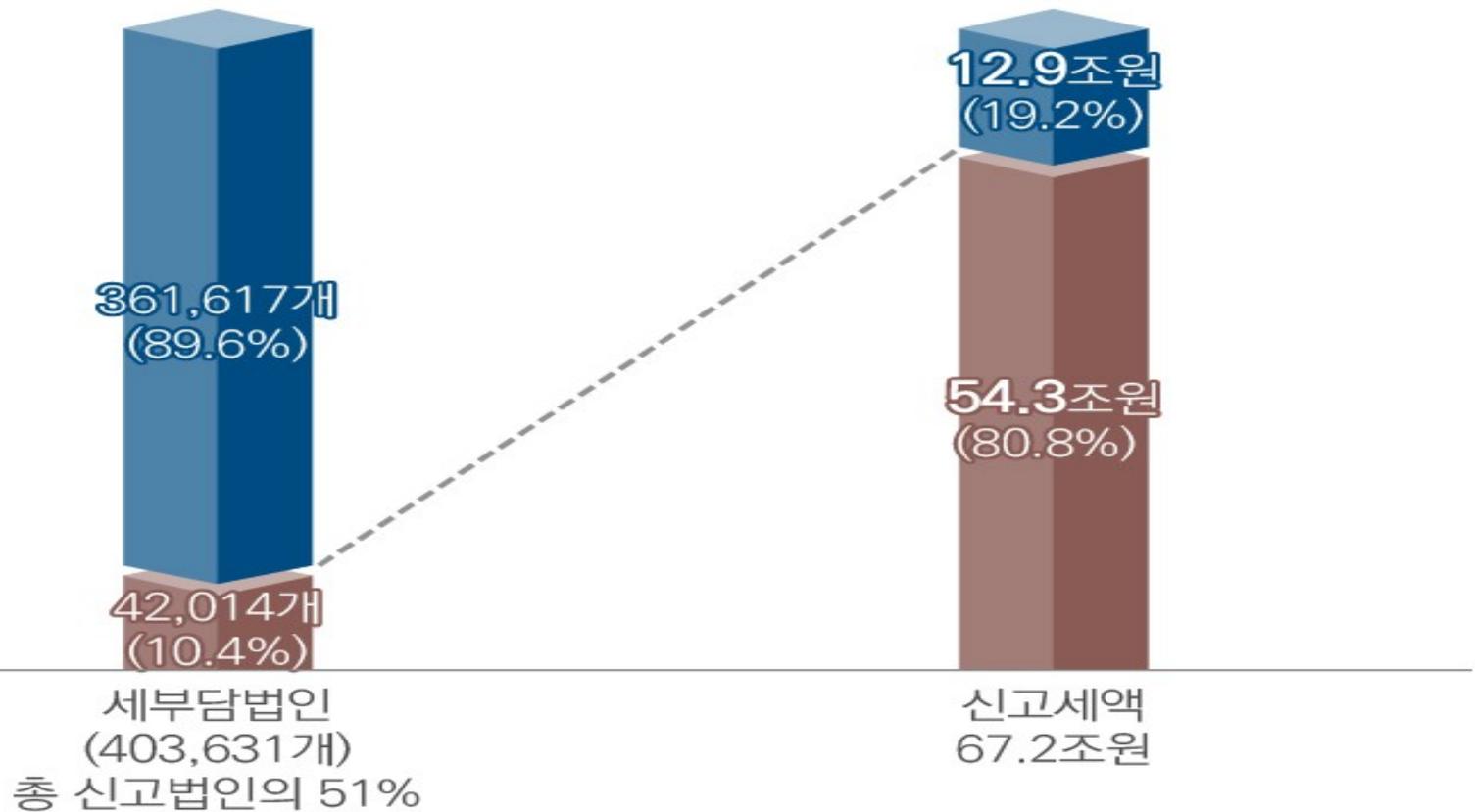
# 그림 19-1 OECD 국가와 홍콩의 법정 법인세율 추이, 1980-2006



자료출처: University of Michigan의 Office of Tax Policy Research([www.otpr.org](http://www.otpr.org))와 세계은행의 World Development Indicator  
 \* 1980년 이후 모든 년도에 자료가 가용한 OECD 24개국에 대해서 평균을 계산함. 홍콩은 비교를 위해서 해당 세율을 그래프에만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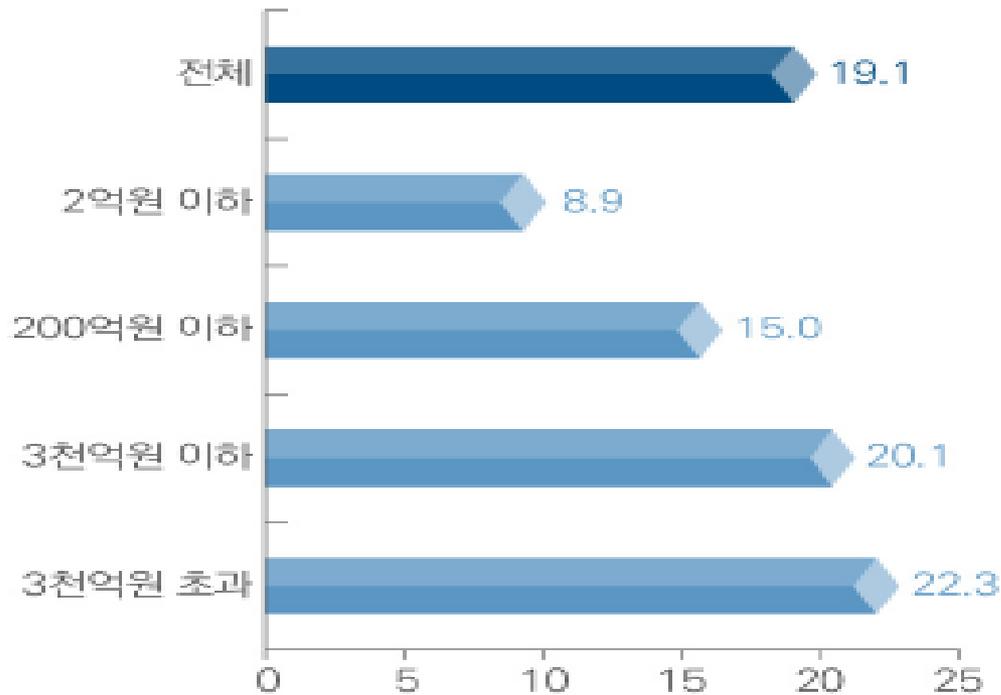
# 법인세 세부담 구조(2019년)

■ 일반기업    ■ 중소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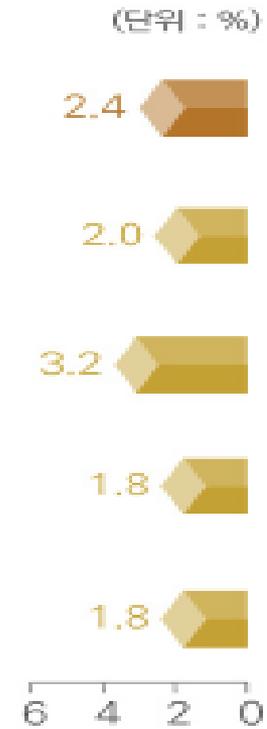


# 법인세 세부담 구조(2019년)

**평균실효세율**  
(국내 총부담세액/과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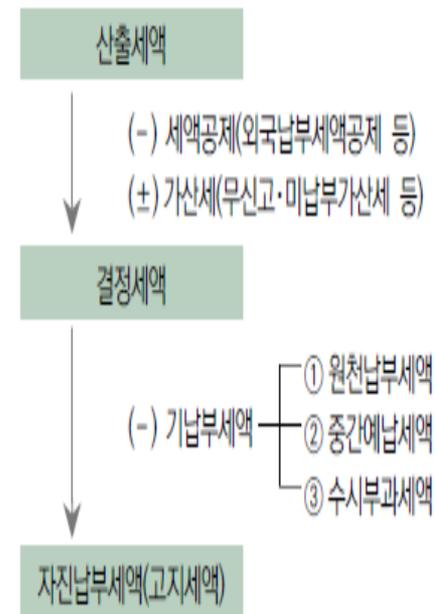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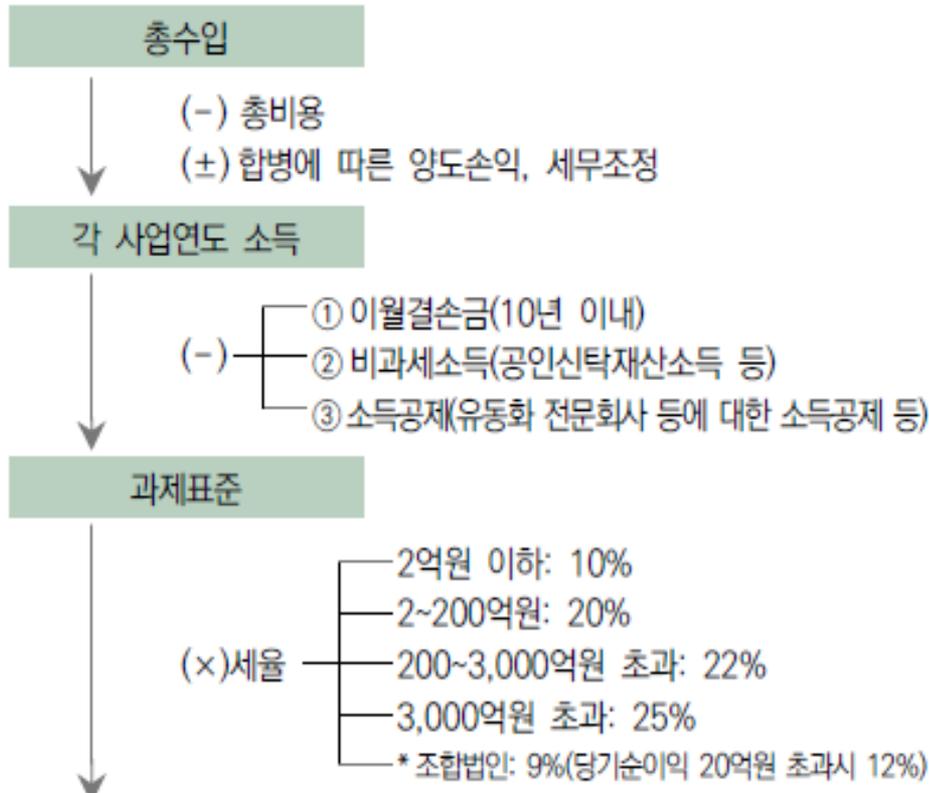


**평균감면비율**  
(공제감면액/과표)



# 법인세 과세체계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법인세율을 곱한 후, 세액공제·감면을 차감



# 법인세 과세대상

납세 의무자	내국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에 본점,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li> </ul>
	외국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li> </ul>
과세 대상	내국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외 모든 소득(worldwide income)</li> <li>※ 거주지국 과세원칙(residence principle)</li> <li>※ 외국납부 법인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허용</li> </ul>
	외국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에서 발생하는 원천소득에 한함</li> <li>※ 원천지국 과세원칙(source principle)</li> <li>※ 과세소득: 이자·배당·부동산·사업소득 등 10가지 (「법인세법」 제93조)</li> </ul>
과세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사업연도소득 = 결산상 당기순이익 ± 세무조정</li> <li>※ 세무조정: '익금산입/손금불산입'의 가산조정 '손금산입/익금불산입'의 감산조정</li> <li>(예) 의제배당: 이익(익금산입) 차입자본 이자, 실물자본 감가상각: 비용(손금산입)</li> </ul>	
과세 표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사업연도소득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li> </ul>	

## 〈국제비교〉

글로벌 과세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소득과 해외소득 모두 과세 대상 포함 후 외국납부세액공제</li> <li>• 체코, 한국, 멕시코, 칠레, 이스라엘 등</li> </ul>
영토주의 과세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소득에 대해서만 과세</li> <li>• 미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li> </ul>

# 법인세율 변화

- (법인세율) 2008~2010년 인하된 후 2011년 중간 과표구간 신설, 2018년 최고구간 신설 및 세율인상(4단계 누진세율 구조)

(단위: %)

과세표준 구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8~ (현행)
1억원	13%	11%	11%	10%	10%	10%
1~ 2억원	25%	11%	11%	10%	10%	10%
2~200억원		25%	22%	22%	20%	20%
200~3,000억원					22%	22%
3,000억원 초과					22%	25%

주: 음영부분은 세율 변경이 이루어진 시기를 표시

# 법인세 최저한세율 변화

- (최저한세율) 법인세율 인하에 맞추어 2008~2010년 인하, 2013~2014년 대기업 중심 세율 인상

※ 비과세, 감면, 공제 등 세감면을 감안하여, 당해연도에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 수준

(단위: %)

과세표준 구간	2007	2008	2009	2010	2013	2014~ (현행)
100억원	13%	13%	11%	10%	10%	10%
100~1,000억원				11%	12%	12%
1,000억원 초과	15%	15%	14%	14%	16%	17%
중소기업	10%	8%		7%		

주: 음영부분은 세율 변경이 이루어진 시기를 표시

## 19.1 법인세의 구조 - 공제항목

- 총수입에서 공제되는 항목
  - 근로자 보수
  - 배당금 비공제, 이자비용 공제: 이중과세 문제
  - 감가상각 공제
    - 자산 구입 자체는 경제적 비용이 아니다
    - 사용에 따른 가치 하락(감가상각)이 경제적 비용
    - 감가상각을 통한 세금 감면 효과
    - 가속상각제도
    - 즉시비용인정(expensing)
    -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예) 광고비

# 감가상각비로 인한 조세감면의 현재가치

## - 정액상각, 내용연수 10년

연수	결손 처분	조세감면 (35% 가정)	조세감면의 현재가치
1	\$10,000.00	\$3,500.00	\$3,181.82
2	\$10,000.00	\$3,500.00	\$2,892.56
3	\$10,000.00	\$3,500.00	\$2,629.60
4	\$10,000.00	\$3,500.00	\$2,390.55
5	\$10,000.00	\$3,500.00	\$2,173.22
6	\$10,000.00	\$3,500.00	\$1,975.66
7	\$10,000.00	\$3,500.00	\$1,796.05
8	\$10,000.00	\$3,500.00	\$1,632.78
9	\$10,000.00	\$3,500.00	\$1,484.34
10	\$10,000.00	\$3,500.00	\$1,349.40
Total	\$100,000.00	\$35,000.00	\$21,505.98

# 감가상각비로 인한 조세감면의 현재가치

- 정액상각, 내용연수 5년

연수	결손 처분	조세감면 (35% 가정)	조세감면의 현재가치
1	\$20,000.00	\$7,000.00	\$6,363.64
2	\$20,000.00	\$7,000.00	\$5,785.12
3	\$20,000.00	\$7,000.00	\$5,259.20
4	\$20,000.00	\$7,000.00	\$4,781.09
5	\$20,000.00	\$7,000.00	\$4,346.45
총액	\$100,000.00	\$35,000.00	\$26,535.51

# 감가상각비를 통한 세금 감면 - 일반

$T$  = 내용연수

$D(n)$  =  $n$ 번째 년도에 과세표준에서 공제될 수 있는 감가상각비의 구입가격에 대비한 비율

$\tau$  = 법인세율

세금감면의 현재가치:

$$\psi = \frac{\tau * D(1)}{1 + r} + \frac{\tau * D(2)}{(1 + r)^2} + \dots + \frac{\tau * D(T)}{(1 + r)^T}$$

## 19.1 법인세의 구조 - 유효한계세율

- 법정세율이 아닌 유효한계세율
  - 유효세율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 이자공제, 감가상각비, 지방 법인세, 인플레이션 등의 효과를 고려
  - 또한, 법인소득에 대한 개인단계에서의 과세
    - 배당금이나 실현된 자본이득에 대해 추가적으로 과세
  - Gravelle[2004]는 미국의 법인 자본소득에 대한 유효 총 한계세율이 32%인 것으로 추정.  
법정세율은 35%

## 19.2 법인세의 귀착과 초과부담

### □ 귀착 문제

- 법인세를 법인부문에서 사용된 자본에 대한 과세로 인식
  - 부분 생산요소세 (제14장): 일반균형모형
  - 법인뿐 아니라 비법인에도 영향; 자본뿐 아니라 노동에도 영향: 소비자 선호, 생산 기술, 시장 조건 등

### □ 초과부담

- Jorgenson and Yun[2001, p. 302]은 법인세의 초과부담은 매우 높아 관련 세수의 24%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 일반균형 모형

# 조세 귀착 (Tax Incidence)

## ○ 귀착(incidence)

- 전가가 이루어진 후 각 경제주체들의 최종적인 조세부담(tax burden)이 결정되면, 조세가 해당 경제주체들에게 귀착되었다고 함[경제적 귀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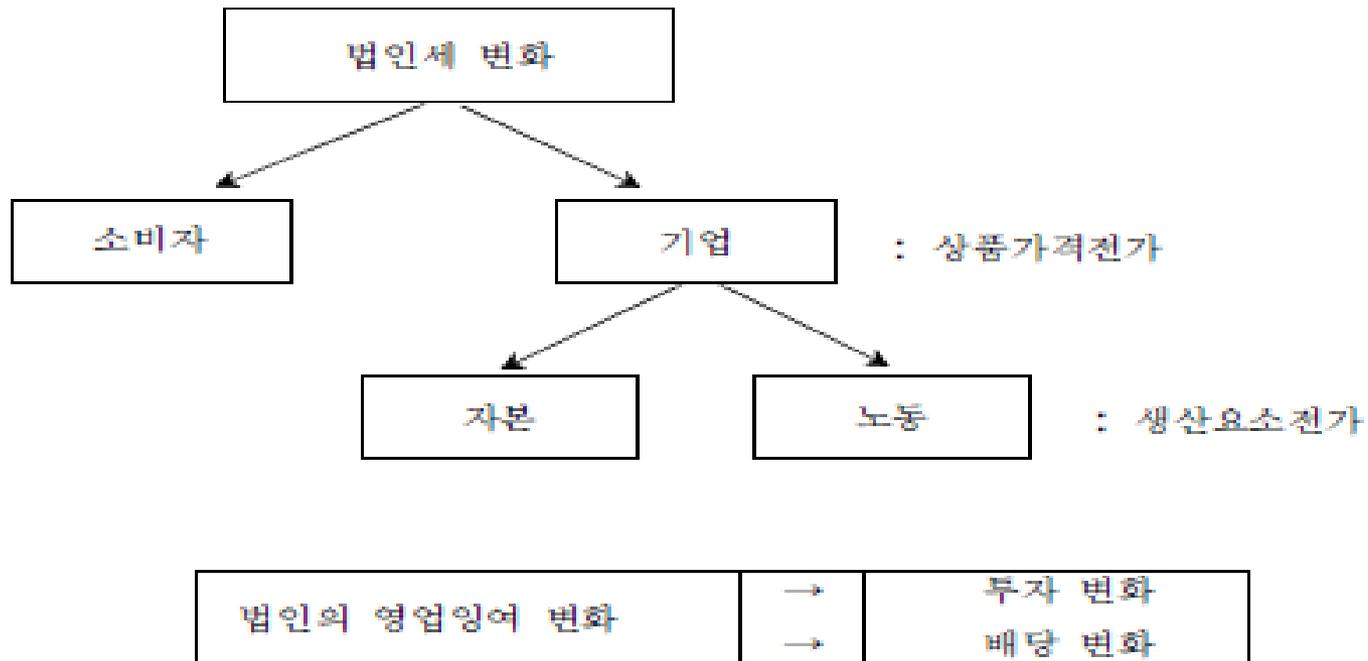
## ○ 전가(shifting)

- 거래단계상 자신보다 이전단계로 전가되는 후전(backward shifting)과 이후단계로 이전되는 전전(forward shifting)



# 법인세 귀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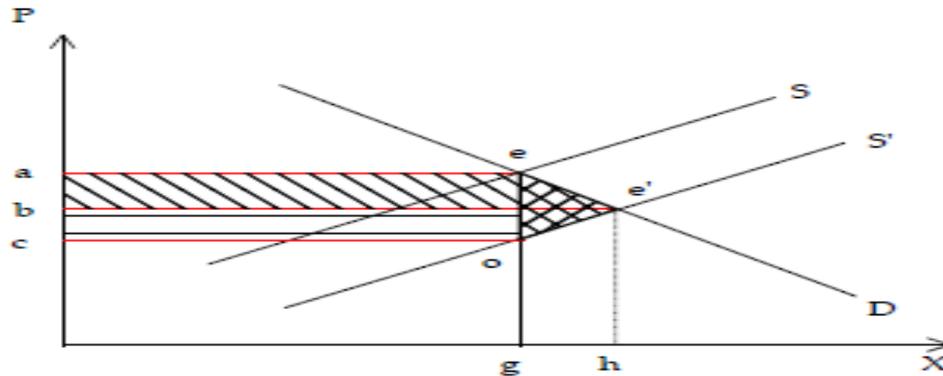
[그림 IV-1] 법인세 인하 효과의 파급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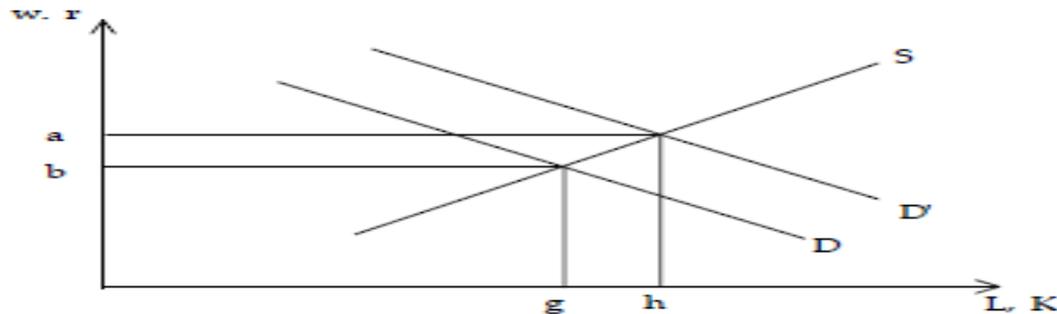
자료: 김승래(2006), 『법인세 개편의 세부담 귀착효과 분석』, 재정경제부·한국조세연구원

# 법인세 귀착

〈그림 1〉 법인세 인하의 경제적 파급 효과



세수 손실분(aeoc) + 초과부담 감소(eoe') = 소비자잉여 증가(aee'b) + 생산자잉여 증가(be'oc)  
 (a) 상품시장(S ⇒ S')



(b) 생산요소시장(D ⇒ D')

자료: 김승래(2006), 『법인세 개편의 세부담 귀착효과 분석』, 재정경제부 · 한국조세연구원

# 법인세 귀착

[그림 IV-6] 법인세 2%p 인하의 귀착효과의 구조적 분해

(단위: 조원)

합계 259 (100)	효율증진 0.28 (10.8)	소비부문 0.44 (17.0)	소비부문 0.44 (17.0)	소비부문 0.44 (17.0)
	세수감소 2.31 (89.2)	생산부문 2.15 (83.0)	노동 0.22 (8.5)	노동 0.22 (8.5)
			자본 1.93 (74.5)	배당 0.39 (15.1)
				유보 1.54 (59.5)

주: ( )는 비중으로 나타낸 %, 배당 성향은 20%

자료: 김승래(2006), 『법인세 개편의 세부담 귀착효과 분석』, 재정경제부 · 한국조세연구원

# 법인세 귀착 : 일반균형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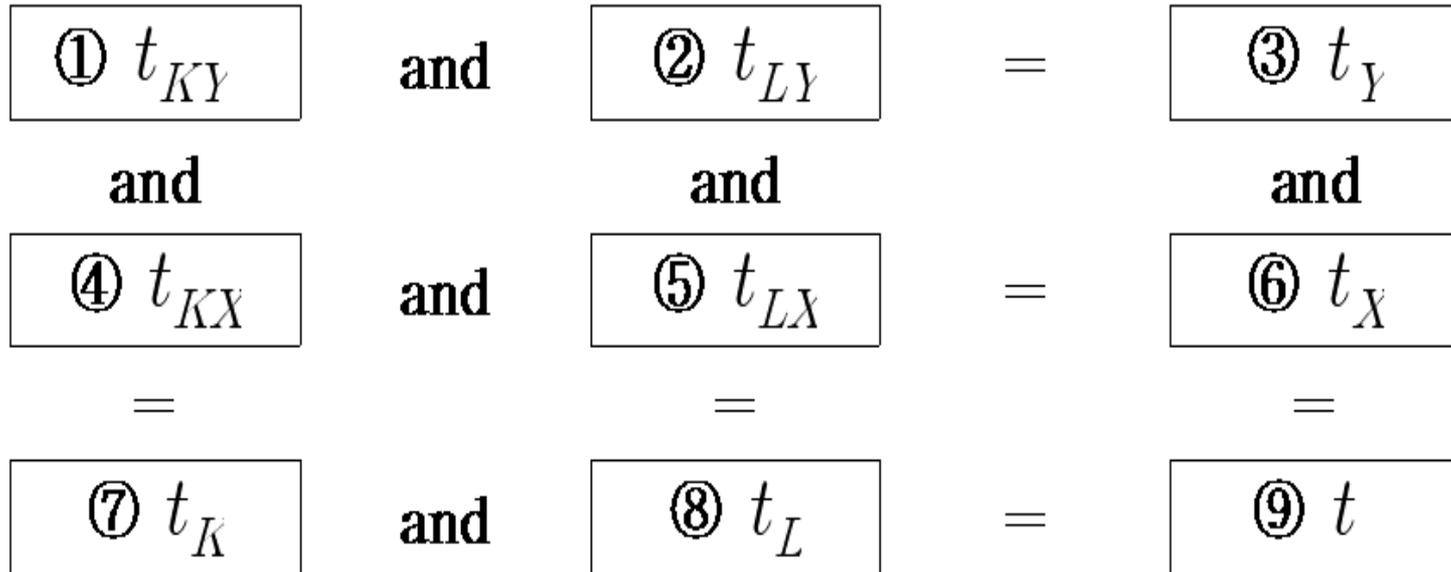
## ■ 일반균형분석의 의의

- 어떤 상품에 과세하면 그 상품의 수요 및 생산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과세된 상품의 수요가 비과세상품으로 대체되므로 그 과세는 비과세상품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친다.
- 한편 생산의 감소는 과세된 재화부문의 생산요소수요를 감소시키며 이는 다시 과세된 부문의 생산요소가격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다른 부문의 요소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모형의 가정 (Harberger 모형)

- 1) 생산요소 ( $L, K$ ) ; 총량 고정, 부문간 자유로운 이동
- 2) 재화 ( $X, Y$ ) :  $X$  노동집약적(서비스),  $Y$  자본집약적(공산품)
- 3) 두 재화, 두 생산요소 모두 대체 가능
- 4) 생산함수 : 1차 동차
- 5) 효용함수 : 동질적
- 6) 모든 시장은 완전경쟁

# 조세 귀착 (Tax Incidence)



①, ②, ④, ⑤ ; 부분요소세, ③, ⑥ ; 선별상품세,  
⑦, ⑧ ; 선별요소소득세, ⑨ ; 소득세

# 조세 귀착 (Tax Incidence)

## ■ 소득세(⑨)

- 일반상품세(③+⑥)나 요소에 대한 일반세(⑦+⑧)는  
소득세(⑨)와 동일

## ■ 노동, 자본에 대한 일반요소세(⑦, ⑧)

- 요소에 대한 일반세는 X부문 및 Y부문의 요소에 모두 과세하므로 요소의 부문간 이동유인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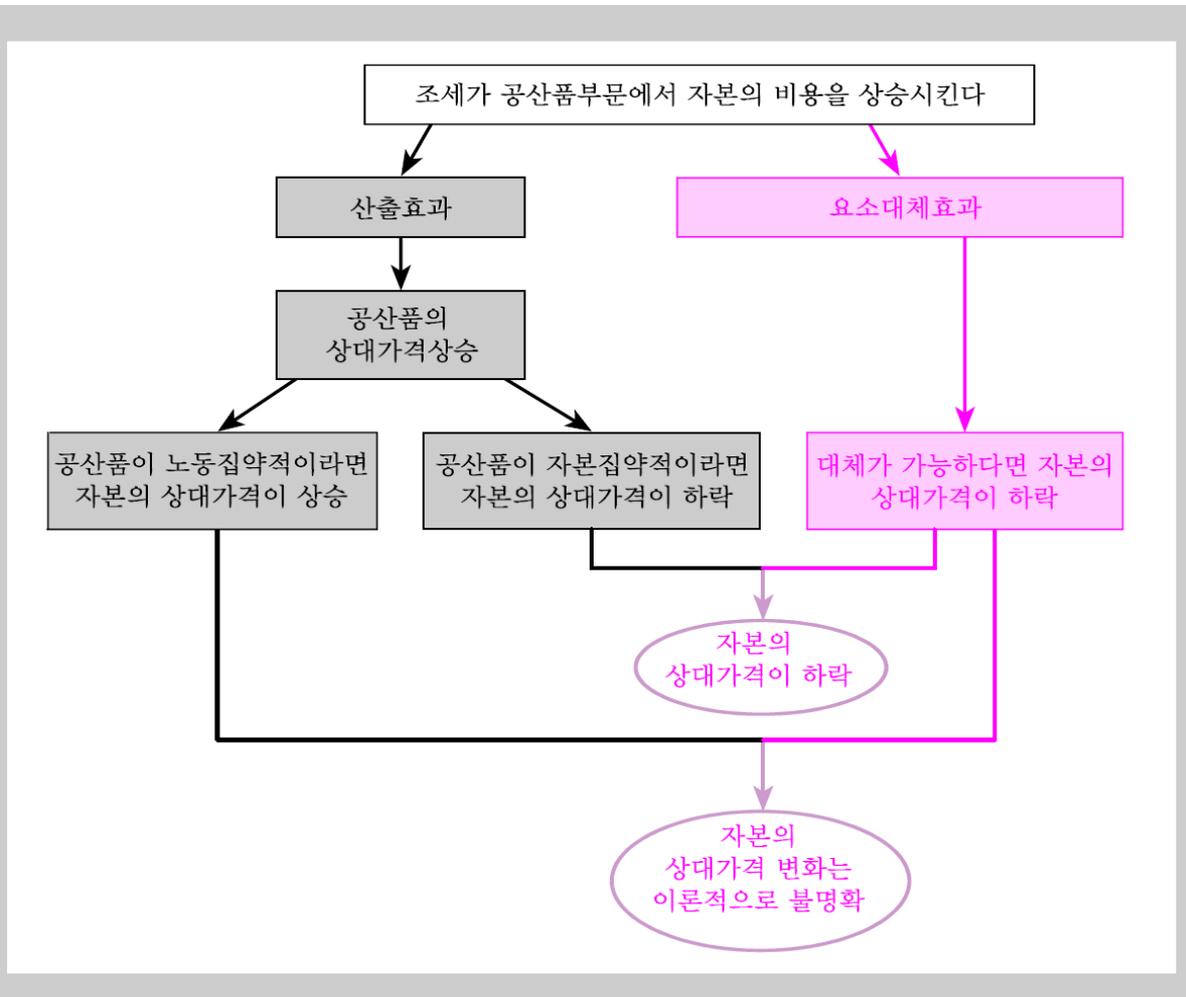
경제내 요소의 공급 총량이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요소공급자에게 모두 귀착

# 일반균형모형에서 부분요소세(①)의 귀착

그림 14.11

## 일반균형모형에서 부분요소세의 귀착

공산품부문에서 자본에 대한 조세는 산출효과로 이어지고 또한 요소대체효과를 낳는다. 산출효과는 공산품 가격에서의 증가로 이어지고 공산품부문에서의 자본과 노동의 사용량을 줄이게 된다. 공산품부문이 자본집약적이라면, 자본의 상대가격이 하락한다. 만약에 노동집약적이라면 자본의 상대가격은 상승한다. 요소대체효과는 생산자들이 자본을 적게 쓰고 노동을 많이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자본이 상대가격을 하락시키게 된다.



## 👉 과제물 제출

- 국회예산정책처 <2017 조세의 이해와 쟁점 3\_소득세>의 주요 내용을 3페이지로 요약하여 정리 제출

NABO

2017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③ 법인세



## 19.2 법인세의 귀착과 초과부담 - 이윤세

-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로 생각하면
  - 자원배분 왜곡이 발생하지 않고, 초과부담이 0
  - 실제 법인이윤과 경제적 이윤
  - Stiglitz [1973] model
    - 전액 부채를 통해서 자원조달
    - 모형의 주된 공헌은 법인세의 효과는 법인 재무구조에 의존함을 보여 줌

# Stiglitz 모형

$G$  = 기계로 생산해 낼 수 있는 연간 산출물의 세전 가치

$r$  = 이자율

$G - r > 0$  이라면 기업은 기계를 구입

이제 법인세를 상정

(1)  $\tau$ 의 세율로 순소득을 과세

(2) 순소득 =  $G - r$

$(1 - \tau)(G - r) > 0$  의 조건은  $G - r > 0$  와 동일한 조건

## 19.3 법인세의 경제행위에 대한 영향

- 법인의 경제행위 결정의 분류체계: 그림 19.2
- 물적 자본 투자
  - 가속도 모형
    - 생산기술에 의해 산출과 자본량 간의 비율이 정해짐
    - 자본에 대한 수요가 자본 가격에 의존하지 않는 단순 가속도 모형에서는 조세 편익이 투자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 신고전학파 모형
  - 현금흐름 모형

# 그림 19-2 법인의 경제행위 결정의 분류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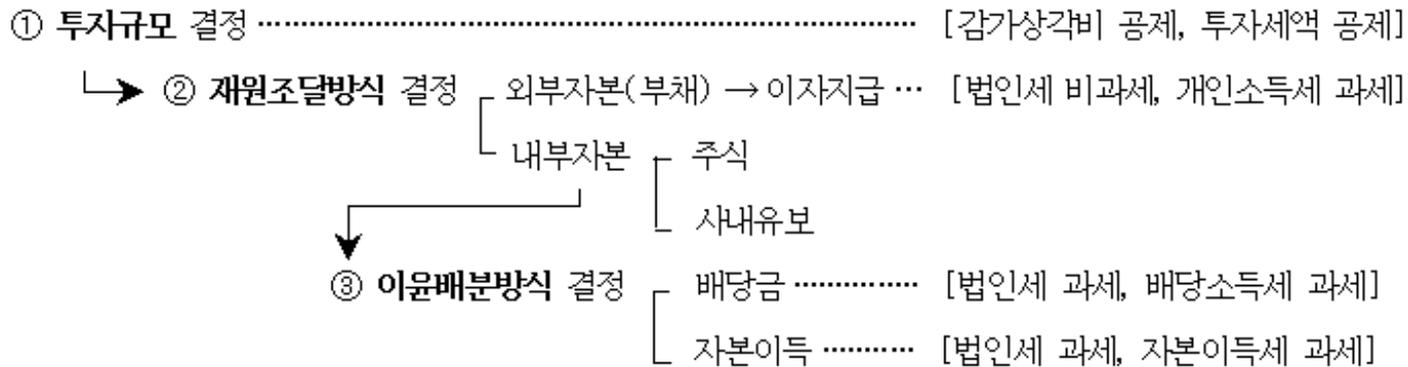


그림 19.2

법인의 경제행위 결정의 분류체계 (hierarchy)

법인의 투자, 자원조달 방식, 이윤배분 방식에는 다양하고 차별적인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 신고전학파 모형

$$\text{자본의 사용자비용} = (r + \delta)$$

$$\text{세후 수익률} = (1 - \tau) * (1 - t)$$

$$(1 - \tau) * (1 - t) * C = (r + \delta)$$

$$C = \frac{(r + \delta)}{(1 - \tau) * (1 - t)}$$

$$C = \frac{(r + \delta) * (1 - \psi - k)}{(1 - \tau) * (1 - t)}$$

# 사용자비용의 투자에 대한 영향

- 분석이 어려운 이유
  - 기대의 역할
  - 자본재 공급의 탄력성
  - 개방경제 하의 문제점

# 현금흐름 모형

- 현금흐름(cash flow): 수입과 지출의 차이
- 고전학파 모형에서는 현금흐름이 투자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음
- 내부 재원 비용 < 외부재원의 비용: 이러한 경우 현금흐름이 투자에 영향
  - 실증분석 결과 현금흐름이 투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법인에 대한 정액세의 투자에 대한 효과
  - 신고전학파모형 영향 없음; 현금흐름모형 투자 감소.

## 19.3 법인세의 경제행위에 대한 영향 - 계속

- 구입하는 자산의 구성
  - 관대한 감가상각비 허용되는 자산의 구입을 유도
- 기업 재무
  - 배당금 지불 선택
  - 주식-부채 선택

## 19.3 법인세의 경제행위에 대한 영향 - 배당

### □ 배당금 지불선택

- 배당과 사내유보(자본이득): 조세 측면에서 사내유보가 유리
-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배당금을 지불하는가?
  - 기업의 재무 건전성의 신호(signal) 역할
  - 고객효과(clientele effect): 낮은(높은) 배당지급 성향을 지닌 기업들은 높은(낮은) 한계세율에 직면한 주주들을 끌어 들인다.
  - 대리인 비용(agency cost)을 낮출 수 있다.
- 실증증거 – Chetty and Saez [2004]
- 배당과 저축

## 19.3 법인세의 경제행위에 대한 영향 - 부채

### □ 주식-부채 선택

- 재원조달 방식: 자기 또는 타인자본, 그림 19.2
- 조세측면 부채가 유리: 이자공제, 배당금비공제
- 하지만 자기 자본이 널리 사용, 이유는?
  - 파산비용
  - 신호효과
- 실증증거 – Gordon and Lee[2001]

### □ 조세와 법인 회계부정

- 조세로 인해 배당을 덜 사용.

# 그림 19-2 법인의 경제행위 결정의 분류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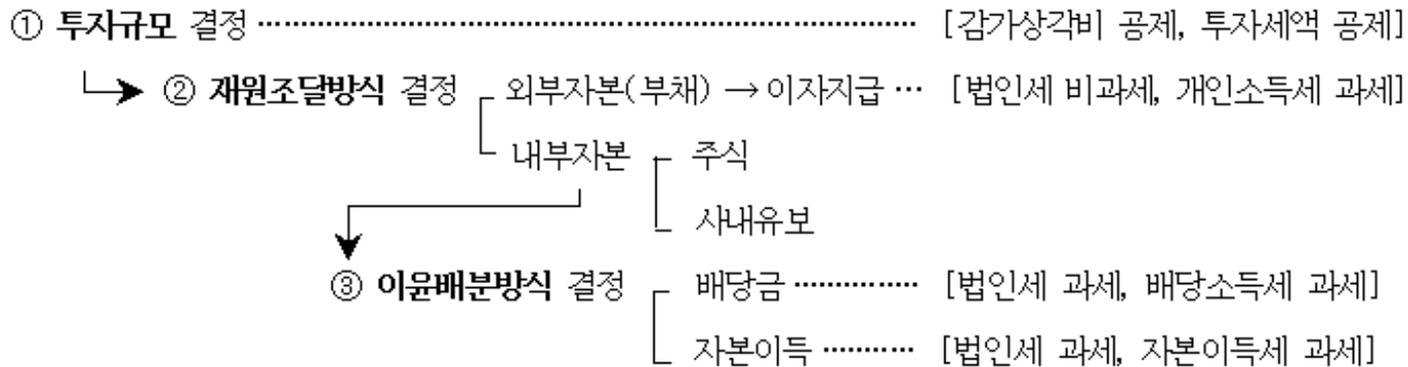


그림 19.2

법인의 경제행위 결정의 분류체계 (hierarchy)

법인의 투자, 자원조달 방식, 이윤배분 방식에는 다양하고 차별적인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 19.4 지방법인세

### □ 한국

- 법인세할 주민세: 국세인 법인세에 10%의 부가세 형태
  - 한국의 법인세율은 25%가 아니고 27.5%
- 2005년의 경우 지방법인세수는 약 3조원 (지방세수의 36조원 중 8%)

### □ 미국

- 주별로 지방법인세 체제가 상이하기 때문에 조세의 귀착과 효율성 분석은 더욱 어려워짐

## 19.5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

### □ 다국적기업의 광범위한 활동

#### ○ 해외 자회사

- 국내 기업에 의해 소유되어 있으나, 해외에서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어 법적인 관점에서는 독립
- 이익금이 송금될 때까지 과세되지 않음

#### ○ 독립운영취급(arm's length system)

#### ○ 이전가격 문제: 정당한 가격은? 절세 기회

### □ 해외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 ○ 세계소득 극대화: 세액공제

#### ○ 국가소득 극대화: 소득공제

# 세계소득 극대화

세계소득 극대화 조건:  $r_f = r_{kor}$

과세후 기업의 선택:  $(1 - t_f)r_f = (1 - t_{Kor})r_{Kor}$

과세+세액공제후 해외소득의 세후수익률은

$$[r_f - t_f r_f + t_f r_f - t_{Kor} r_f = (1 - t_{Kor})r_f]$$

세액공제액에 상한을 두고 있는 이유는?

# 국내소득 극대화

$$(1 - t_f)r_f = r_{\text{Kor}}$$

$$r_f = r_{\text{Kor}} / (1 - t_f)$$

if  $t_f < 1$ , then  $r_{\text{Kor}} < r_{\text{Kor}} / (1 - t_f)$

해외납부세액을 소득공제하면:

$$r_f(1 - t_f)(1 - t_{\text{Kor}}) = r_{\text{Kor}}(1 - t_{\text{Kor}})$$

## 19.6 법인세법 개혁 - 완전통합

### □ 완전통합 (Partnership Method)

- 법인을 파트너십 기업으로 취급, 법인세 폐지
- 법인소득은, 배분 여부에 상관없이, 주주에게 할당; 주주는 자신의 몫에 대해서 개인소득세
- 관련 이슈들
  - 법인의 근본적 성격
  - 행정적 어려움
  - 효율성에 대한 영향
  - 저축과 소득분배에 대한 영향

# 완전통합의 효율성

- 법인과 비법인 부문 간 자원배분의 왜곡은 제거
- 조세로 인한 저축 의사결정 왜곡이 감소
- 현재의 조세체제하의 나타나고 있는 “과도한” 사내유보의 유인을 제거
- 현 조세체제의 자원조달에 있어서 부채로의 편향을 제거

## 19.6 법인세법 개혁 - 배당경감

### □ 배당경감 (Dividend Relief)

- 법인세를 독립적인 체제로 유지하지만 이중과세는 없애자!
- 두 가지 방식: 표 19.1
  - 법인단계 비과세 + 개인소득세 과세
    - gross-up 또는 imputation 이라고 불림
    - 이중과세 문제 해결
    - 한국에서 부분적으로 이를 사용
  - 법인단계 과세 + 개인소득세 비과세
    - 이중과세 문제 해결, 하지만, 자기자본과 타인자본간의 비대칭성 문제는 여전히 남음
    - 미국에서 부분적으로 사용

표 19-1

		(A) 자기 자본에 대한 과세				(B) 타인자본에 대한 과세		
		(A1)기업 단계 과세	(A2) 개인단계 과세		(A3) 합계 ( $c_g = 0$ , 세후이윤 모두 배 당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단순 가정하고 계산됨. 단 (다3)는 예외)	(B1)기업 단계 과세	(B2) 개인 단계 과세	(B3)  합계
			배당 과세	자본이득과세				
(가) 법인세, 개인소득세 별도 존재		$\tau$	$t$	$c_g$	$\tau + (1 - \tau)t$	비 과 세	$m$	$m$
(나)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완전통합			$t$				$(\approx t)$	$(\approx t)$
(다) 배당금 법인단계 비과세, 개인소득세 과세	(다1) 배당비용 처리	비 과 세	$t$	$c_g$	$t$			
	(다2) gross-up	$\tau$	완전 gross-up 이후, $t - \tau$	$c_g$				
	(다3) 한국	$\tau =$ 0.25	부분 gross-up(0.15), 부분 세액공제 (0.15), $t = 0.35$	비 과 세	배당: $0.25 + (1 - 0.25) \times (1 + 0.15)$ $\times (0.35 - 0.15) = 0.426$  자본이득: $0.25 + (1 - 0.25) \times 0 = 0.25$	비 과 세	0.35	0.35
(라) 배당금 법인단계 과세, 개인소득세 비과세	(라1) 완전 비과세	$\tau$	비과세	비 과 세	$\tau$	비 과 세	$m$ $(\approx t)$	$m$ $(\approx t)$
	(라2) 미국	$\tau =$ 0.35	0.15	0.15	$0.35 + 0.15 = 0.45$	비 과 세	0.35	0.35

주: 표에서 사용된 문자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tau$ 는 법인세율,  $t$ 는 배당금에 대한 개인소득세율,  $c_g$  자본이득세율,  $m$ 은 이자소득세율이다.

## 과제물 제출

- 로젠 **Ch.19** 연습문제(**Exercises**)에서 **#1, #3, #4, #7**번 문제를 풀이하여 제출